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소유 허용〉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

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 -----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획자”라 한다), 벤처투자회사-----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② -----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

현행	개정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계열회사가 아닌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 ----- ----- -----
2. 자회사인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u>벤처투자회사</u>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2. -----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 ----- -----

현행	개정안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u>벤처투자회사</u> 및 <u>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u><신설></u> 2. ~ 6.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u>벤처투자회사</u> 및 <u>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u>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	----- ----- ③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u>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 -----<u>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u>----- ----- ----- -----

현행	개정안
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현행법 제18조제2항제5호1)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제20조제1항2)에서 예외적으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에서 지분구조, 부채의 비율, 출자제한, 투자금지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음.

□ 202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투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일관되게 적용되어 오던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둔 것으로서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임.

-
- 1)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2)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즉,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우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사업의 성장모델 발굴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가 174개인 데 반해, 2024년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 벤처투자는 14개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 벤처투자 현황>

기업집단	지주회사명	CVC명	소속	유형	보유방식
동원	동원산업	동원기술투자	공시대상	신기사	신규 설립·등록
GS	지에스	GS벤처스	상호출자	신기사	
F&F	F&F홀딩스	F&F파트너스	중견	신기사	
효성	효성	효성벤처스	상호출자	신기사	
한일	한일홀딩스	한일브이씨	중견	신기사	
세아	세아홀딩스	세아기술투자	상호출자	신기사	
대웅	대웅	대웅인베스트먼트	중견	벤처사	
LX	엘엑스홀딩스	엘엑스벤처스	상호출자	신기사	
두산	두산	두산인베스트먼트	상호출자	신기사	
SJM	에스제이엠 홀딩스	에스제이엠 인베스트먼트	중견	신기사	
동국제강	동국홀딩스	동국인베스트먼트	공시대상	신기사	CVC 보유 후 지주회사 전환
빗썸	빗썸홀딩스	BTC인베스트먼트	중견	벤처사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기술투자	상호출자	신기사	지주체제 내 편입
CJ	CJ	CJ인베스트먼트	상호출자	벤처사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창업 기획자(Accelerator)를 추가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자금흐름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³⁾에 투자하는 회사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2023년 말 기준 461개가 등록되어 있고 누적 투자금액은 약 2조 8,660억원임

- 일반적으로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의 지분을 받는 대신 전문보육을 제공⁴⁾하여 창업기업이 벤처캐피털(VC: Venture Capital)의 투자 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하도록 돕고 Series B⁵⁾ 이상의 투자를 받는 등 성공모델이 되었을 때 해당 지분을 수익화 하는 사업모델을 가짐.

□ 창업기획자는 현행법상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⁶⁾, 입법화되어도 현행법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5)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유치(Series A)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임.

6)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의 자본금 요건 및 투자 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 및,

CVC 행위제한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어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봄.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CVC 행위제한 현황>

항 목		내 용
CVC 설립 · 운용	형태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지분구조	▪ 일반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허용행위	▪ “투자” 행위만 허용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부채비율	▪ CVC 자체의 차입한도는 200%로 제한
자금 조달 · 투자 등	자금조달	▪ 펀드 조성시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출자 外 외 부자금은 투자조합별 40%로 제한 * ①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 금지 ②외부자금 중 총수일가 출자 금지
	투자금지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CVC 계열사, CVC 소속 기업 집단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
	투자의무	▪ 해외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
	매각금지	▪ 총수일가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투자지분 매각 금지
보고의무		▪ CVC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 가능한 CVC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완화로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구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자본금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차입금 20% 미만)	1억원 이상
투자 의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별도 비율 규제 X)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CVC 보유 허용은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편취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국내 벤처투자자과 혁신이 저조한 것은 투자 자본의 부족이 아닌 기술탈취나 대기업집단의 견고한 진입장벽이라는 의견⁷⁾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7) 2020년 제382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쟁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일부 전문가가 해당 우려를 제시하였음.